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11 선고 2020가단12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나영현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2.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 요청을 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 한다)와 온라인으로 친분을 쌓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자신이 미국 UN 소속으로 보상받을 것이 있으니 원고가 이를 대신 수령해 달라고 하면서 국제변호사 선임비용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C의 말에 속아 피고의 D은행계좌로 2019. 9. 10.부터 2020. 9. 29.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9. 10.부터 2020. 9. 29.까지 소위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기범행을 당하여 피고 명의의 D은행계좌로 합계 1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C의 원고에 대한 위 사기범행을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C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 12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취인의 금융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도 수취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으면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D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125,000,000원을 모두 여러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 계좌에 아직 남아 있는 돈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부당이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원고가 C에게 보낸 신분증 사진을 피고가 가지고 있었던 점, C와 원고의 대화를 C 휴대폰에서 캡처한 사진을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C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C와 공모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분산하여 여러 계좌로 이체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로맨스 스캠 형태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을 여러 곳에 분산 송금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C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C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과실로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는 자신의 지인인 H 부부가 중고물품 구입대금을 보내오면 피고가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대략 확인하고 그 돈으로 중고물품거래업자에게 물품공급여부를 확인하여 판매자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곧바로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송금하였고,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계좌들을 살펴보면 중고물품 거래와 관련된 업체 등에 송금된 금액도 있기는 하나 개인 계좌로 보내져 체크카드로 이용되거나 바로 인출되어 현금화된 경우가 많다.

②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한국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도 그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베트남의 구매자들이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중고물품 거래업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등 입금자가 모두 한국인임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원고 등이 사기범행을 당하여 송금한 돈을 여러 곳으로 송금하여 원고가 이를 회수할 수 없게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피해자인 원고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의사라고 하면서 국제변호사 선임비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한 C와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하면서 별다른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송금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방조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7,500,000원(=125,000,000원 × 30%)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지급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면책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피고의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 2호증의 서류가 작성되었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원고와 피고가 2020. 10. 13. 만났을 때 작성한 서류(을 제2호증)에 ‘나는 미스터 B에게 더 이상 사건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정 소유자 B에게 125,000,000W 다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면제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 ② 원고가 피고, C 등을 2020. 10. 12. 경찰에 신고하였고, C와 함께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I’이라는 사람(이하 ‘I’이라 한다)이 2020. 10. 24.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C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한 경찰신고를 철회할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였다. I은 2020. 10. 25. 원고에게 변호사, 경찰에게 피고에 대한 사건 취소를 요청하라고 하고 C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을 제1호증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피고에게 보낼 것을 지시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따라 적어서 피고에게 보낸 것이 을 제1호증 서류이다.
- ③ 원고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에 피고, I의 요청대로 서류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어서 을 제1, 2호증 서류는 모두 어색한 번역투로 작성되었다.
-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인물로 파악한 사람이 피고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금전 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 대한 채무를 무조건적으로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을 제1, 2호증의 서류가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 변제 조건부 면제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결국 C 측으로부터 원고가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채무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